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卷之三

- 10 -

제61)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 업체 행정처분(2차) 보고(알림)[대일화학공업(주) 등 2개업체]

1. 우리 청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체 대일화학공업(주) 등 2개업체에 대하여 룰이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음을 보고(알림)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우리 청 의료제품안전과에서는 행정처분 이행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 : 행정처분서 각 1부. 끝.

경인자 박식 풀의 약품 안전 청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법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약품관리총괄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바이오의약품신설관리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품안전관리과장), 부산시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제품안전과장),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대구시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제품안전과장),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광주자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제품안전과장), 대전시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운영지원과장), 대전시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약제품안전과장), 서울특별시상(보건의료정책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성생과장), 인천광역시상(보건정책과장), 평수광역시장(기강정책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성생과장), 울산광역시상(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정책과장), 경기도지사(식품의약과장), 충청북도지사(식품의약안전과장), 충청남도지사(식약안전과장), 청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식품의약과장), 경상남도지사(식품의약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부산광역시장(식약품안전과장), 보건복지부정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정책관), 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약제제과장), 김경보현심사평가원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약제제부장), 한국수미자원장

- 1 -

九四

SILK

10

中華書局影印

八九

11

卷之三

2014 / 221

八

(전) 427-7001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6층 / <http://gyeongin.mfds.go.kr>  
국립환경과학원

전화번호 02-2110-8616 팩스번호 02-2110-0801 / kmhappy7@korea.kr / 비공개(6,6,7)

주동아는 드디어 성보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 행정처분서

## 1. 임체현황

· 업체명 : 대원화학공업(주)  
· 업종 : 의약품 제조업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세남로 72  
· 대표자 : 박 대식

## 2. 처분사항

- 의약품 제조품목 “톱마룡정(톱페리돈)<품목번호 : 제95호>” 판매업무 정지 6개월(2014. 8. 1. ~ 2015. 1. 31.)을 명함.
- 2014. 9. 3.까지 “2014년 의약품 재평가자료(생농성시험 계획서 등)” 및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헌)” 또는 재평가 대상 제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해당 품목 허가 취소)할 것임

## 3. 처분사유

· [불법] 참조

## 4. 근거법령

-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76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2호,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 ‘의약품 재평가 신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4. 7. 2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문임] 차분사유

2014년 1월 1일부로 재판기사로 [생물학자 등] 성시립 개화사 등 및 문현] 미재출(2차)  
· 50주기 기념 전시회 등(한국미술전시회 제95회)

# 행정처분서

## 1. 업체현황

업체명 : 한불제약(주)

업종 : 의약품 제조업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원당로 354

대표자 : 정승환

## 2. 처분사항

① 의약품 제조품목 “톱페리스정(톱페리돈)<품목번호 : 제158호> 등 7품목  
(분위 1 참조)” 각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4. 8. 1. ~ 2015. 1. 31.)을 명함.

\* 2014. 9. 3까지 “2014년 의약품 재평가자료(생동성시험 계획서 등)” 및  
2014. 11. 26까지 “2014년 의약품 재평가자료(문현)” 또는 재평가 대상 제  
외신청서를 식약처(의약품관리총괄과)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중처분(3차,  
해당 품목 하가 취소)할 것임

## 3. 처분사유

① [분위] 참조

## 4. 근거법령

① 약사법(시행 2014.03.18.) 제33조, 제76조

②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  
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2호, II.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③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4. 7. 2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본 임] 지문서 유

- 2014년도 교양과 재평가 가로[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현] 미재출(2차)

### [본 임 1] 해당 품목 목록

번호	제품명	품목번호	비고
1	풀제과 가정(풀제과류)	158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현
2	메타발정(엽산메타소풀)	27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및 문현
3	에치던정(엽산더나로피던)	268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4	에우민정100밀리그램(알로우리놀)	72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5	에우민정300밀리그램(알로우리놀)	73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6	辱비인정(수출정: 스피포스정)	284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
7	한국엽산우페나트라정	161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등